

창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가단1193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학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변 론 종 결 2024. 4. 29.

판 결 선 고 2024. 5. 13.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20. 4. 8. 접수 제26927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는 소외 B(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26460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6. 12. 24. “채무자는 원고에게 99,038,477원 및 그 중 29,483,898원에 대한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C 유한회사는 2018. 1. 26.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5. 3.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E와 채무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20. 1. 10.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8. 9. 이 사건 소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사실, 나아가 그 소유권 이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생긴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 까닭에 법원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역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사망시까지 돌봐 왔고,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양으로 인한 기여분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망인의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민법 제1060조.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무자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별지